

[별표 26] <개정 2011.11.25>

허가 등의 수수료(제57조제1항 관련)

대상	금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3만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허가	2만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	1만 5천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허가	1만 5천원
액화석유가스 영업소 설치허가	1만 5천원
가스용품 제조사업허가	3만원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재등록	3만원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	1만5천원
변경허가	1만 5천원
변경등록	1만5천원
허가증의 재발급	1만 5천원
등록증의 재발급	1만5천원